

『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7월 9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7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7월 17일

제2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근 도

나. 제안이유

-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재난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하여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, 범위, 방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가.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, 범위, 방법의 근거 마련
(안 제41조제2항)

-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 또는 지원
(가정용, 일반용, 옥탕용, 전용공업용)

나. 위법한 과태료 절차 관련 규정 정비(안 제51조, 제53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, 총무과와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강 창 조

○ 본 「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은,

-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한 상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- 주요내용으로는 재난 위기경보가 ‘심각’ 단계로 발령된 경우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 또는 지원 범위를 최대 30%까지, 감정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로 구체화한 것이며, 조례가 개정되면 감면에 따른 세입감소가 예상되나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 발생 시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고,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